# 디지털자산거래법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64

발의연월일: 2022. 7. 14.

발 의 자:민병덕·강민정·김경만

김승남 · 김승원 · 위성곤

윤영덕・이수진(비)・이용빈

이용선 · 천준호 의원

(119]

##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인터넷 및 IT 기술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AI/X R/메타버스/블록체인 등의 분야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기술과 거래시장에 대해서는 '규제와 육성'이라는 상반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디지털자산 관련 법과 제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의 권고안에 따르기위한 기본적인 요소들만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자산의 정의, 활용, 투자, 시장 질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세금 문제와투자 사기 및 손실 문제, 그리고 투자자 보호 문제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본 디지털자산거래법이 대한민국 블록체인 산업과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도하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하며 본 법안을 발의합니다.

## 주요내용

- 가. 가상자산 외에, P2E 게임화폐, NFT 등을 망라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의 및 '거래 및 사업을 위한 다양한 주체'에 대한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사업을 관리하는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를 금 융위원회 산하에 설립하고 운영(안 제5조부터 제18조까지)
- 다.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인가에 대한 사항(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 라. 디지털자산 발행과 심사에 대한 사항(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 마. 디지털자산 시장 이용자 보호에 대한 사항(안 제47조부터 제55조 까지)
- 바. 디지털자산 공정 시장을 위한 관련 단체에 대한 사항(안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 사.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시장 감시 및 감독에 대한 사항(안 제61 조부터 68조까지)

# 디지털자산거래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자산 금융산업의 진흥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항과 건전하고 공정한 디지털자산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디지털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사업 및 투자기회와 제도적 보호를 제공하여 세계적 추세를 선도하는 선진 디지털자산 금융경제문화를 창달하고 민주적 국민경제 및 산업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자산"이란 블록체인기술 등의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보안 및 암호 체계를 통하여 생성되어 '전자거래장부'에서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고 사용 공동체 내에서 지급결제수단 또는 경제적 가치의 저장 및 증대 수단으로 거래되는 전자적 증표(이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말한다)를 말하며, 디지털 형태로 개발되어 저장 및 활용되는 저작물과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화폐, 상호대체불가능 토큰(NFT, Non-fungible Token)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화폐, 유가증권, 재화, 용역 등 경제적 가치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자가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한 것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또는 무형의 획득물
-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 전자지급수단 및 제 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 마. 「상법」 제86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 바. 그 밖에 거래와 특성을 고려하여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디지털자산금융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 복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경제행위로서 디지털자산 금융거래와 관 련하여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디지털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나. 디지털자산으로 타 자산을 매매하는 행위
  - 다. 디지털자산을 타 디지털자산으로 교환하는 행위
  - 라. 디지털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바. 그 밖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등의 기관이 정한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 조달 등의 범죄 등에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
  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3.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란 디지털자산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디지털자산의 매매 및 디지털자산과 타 자산을 교환 등의 거 래를 위한 정보제공, 중개, 알선하기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디지털자산금융거래사업자"라 한다)
  - 나. 타인을 위하여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디지털자산을 보관,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이하 "디지털자산보관사업자"라 한다)
  - 다. 디지털자산의 이전 및 교환을 위하여 이전, 보관,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디지털자산지갑서비스사업자"라한다)
  - 라. 그 밖에 디지털자산금융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4. "이용자"란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자산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5. "디지털자산발행인"이란 디지털자산을 발행하여 디지털자산금융 시장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 6. "메인넷(Mainnet)"이란 다른 디지털자산 거래 플랫폼이나 시스템 등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디지털자산의 전자거래장부 등을 생성할 수 있는 전반적인 규약과 체계를 말하며, 이는 디지털자산의 발행, 전송, 보관, 보안, 채굴, 거래원장 생성 등의 기술을 포함하며 해당 디지털자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
- 7. "토큰(Token)"이란 메인넷의 기술을 상속하여 발행되고 운용되는 디지털자산이며, 토큰의 전송 및 거래 내역은 해당 메인넷 거래원 장에 기록된다.
- 8. "백서"란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디지털자산에 대한 아이디어, 기반 기술, 방법론, 발행목적, 관련 시장 현황 및 전망, 그리고 사회적 책임 등을 명시한 사업 계획을 디지털자산을 발행하기 전에 확정 하여 배포하는 공식 문서를 말한다.
- 9. "온라인 플랫폼"이란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가 디지털자산금융업을 위해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응용 프로그램, 금융기관 연동 솔루션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통신 운용체계를 말한다.
- 10. "콜드월렛(Cold Wallet)"이란 디지털자산 해킹 및 보안 위험에 대비하여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가 이용자 소유의 디지털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 11.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 가. 누구의 명의로 하던지 자기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 나. 주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누구의 명의로 하던지 자기의 계산으로 디지털자산금융사업 자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총수의 100 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한 다)을 소유한 자
    - 2) 임원의 임명 등으로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12. "디지털자산 상장"이란 디지털자산을 발행한 자가 디지털자산금 융위원회의 상장 심사와 인가를 거쳐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전 산관리시스템 또는 이를 위탁받은 자의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13. "사전투자모집"은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고 하는 자 또는 이미 발행된 디지털자산을 판매하려고 하는 자가 디지털자산 발행·개 발·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 조성을 위하여 디지털자산금융위원

회에 등록하여 디지털자산 상장 전에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내와 국외에서 디지털자산금융 산업에 관련하여 이루어진 모든 행위에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디지털자산금융업에 관련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가 디지털자산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형법」 제2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장 디지털자산금융산업 진흥

- 제5조(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업무)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의무를 준수함은 물론 디지털자산금융산업의 진흥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여 디지털자산 금융경제 문화를 창달하고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를 둔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자 및 거래 관리·감독
  - 2. 디지털자산 금융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 3. 디지털자산 금융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제6조(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조직) ①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1명은 상임으로 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 중 6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운용의 기반 기술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2. 대학에서 법률학, 경제학, 경영학, 컴퓨터공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 연구 또는 실용기관에서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에 해당한 사람 중에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의 의결로 추천하는 자
  - ③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를 대표하고 디지털 자산금융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디지

털자산금융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제6조제2항의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명직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새로 임명 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 제9조(정치활동의 금지) 임명직 위원은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직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피성년후견인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사람
  - 6.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이 법 또는 그 밖의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하다)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1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및 임명직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 4. 그 밖의 보수를 받는 직
- 제12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① 임명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아니한다.
  - 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제13조(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회의 등) ①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회의는 2명 이상 위원의 제청 또는 디지털자산금융위원장의 요청으로 디지털자산금융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회의는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디지털자산금융 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금융산업의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디지털자산금융산업의 진흥 정책과 발전 방향 및 기본 계획을 담은 디지털자산금융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1. 기술평가기관 및 민관 협력기관에 관한 사항
  - 2. 블록체인 기술 등 디지털자산 발행과 유통의 기반이 되는 기술에 관한 사항
  - 3. 디지털자산의 기술적·산업적 품질평가에 관한 사항
  - 4.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5.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항
  - 6. 그 밖의 디지털자산 금융산업발전과 거래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 ③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금융산업의 진흥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 관 및 공정거래위원장(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 시 타 부처 장관도 추가된다)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④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매년 시행 계획의 이행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다음 연도 시행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⑥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상 정하고 금융위원회는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⑦ 금융위원회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①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금융산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가 협의를 하여야 할 대상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실태조사) ①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 앙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의 영업활동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7조(디지털자산금융산업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①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금융산업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금융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 구가 권고하는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의무 를 준수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와 연계할 수 있는 자금 세탁방지 전산 시스템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자산금융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를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 및 운용하여야 한다.
  - 1. 사전투자모집 등록을 위한 백서평가, 기술가치평가, 사업가치평가, 신용평가, 법률검토
  - 2. 상장심사 및 거래적합성평가를 위한 백서평가, 기술가치평가, 사업가치평가, 신용평가, 법률검토, 상장종합평가
- 제18조(기술평가기관) ①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의 백서 평가, 기술가치평가 및 보안 기술 평가 등과 관련한 기술적 평가를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

기관에 그 평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대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거나 위임받은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디지털자산금융거래업자 허가 시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된 기반 기술의 마련 여부 확인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여부 확인
- 2. 디지털자산발행인의 디지털자산 발행 시 블록체인기술 등 핵심적 기술 탑재 여부 확인과 오류의 확인
- 3. 디지털자산발행인의 디지털자산 상장 시 백서 및 제출 자료에 대한 법적, 재무적, 신용적, 절차적, 기술적 사업 능력과 타당성 확인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③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은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에 평가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은 기술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작성하고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표하여야 한다.
- 제19조(디지털자산금융산업 연차보고서) ①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매년 디지털자산금융산업 발전 정책의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 2.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3. 연도별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
- 4. 디지털자산금융산업 제도 개선 실적
- 5. 이용자 보호에 관한 추진 실적
- 6. 디지털자산금융산업 통계 및 분석
- 7. 디지털자산 관련 범죄에 대응 및 관리실적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0조(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와의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이 디지털자산금융 관련 사업을 신설 또는 변경하 여 추진하려는 경우 그 타당성 및 효과, 다른 법령과의 상충 여부 등에 대하여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방법 등 협의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필요한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에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제21조(디지털자산금융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업무) ① 디지털자산금융 산업진흥원을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디지털자산금융산업진흥 기본계획 실행과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업무 일부를 위임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산업진흥원은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진흥을 위한 기술 연구개발 및 교육을 수행하고,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금융위 원회의 정책지도 및 감독에 따라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에 대한 검 사, 감독, 관리, 업무를 진행한다.
- ③ 디지털자산금융산업진흥원은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국제자금세탁방지 기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 제22조(디지털자산금융산업진흥원 정관) ① 디지털자산금융산업진흥원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직원에 관한 사항
  - 5. 업무와 집행에 관한 사항
  - 6.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7. 공고의 방법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디지털자산금융산업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3조(디지털자산금융산업 발전 재원) 금융위원회와 디지털자산금융

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금융 관련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자산금융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디지털자산금융산업 발전 기금) ① 디지털자산금융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디지털자산금융거래의 건전하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금융산업발전기금(이하 "디지털 자산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디지털자산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3. 기금운용수익금
- 4.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 ③ 디지털자산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디지털자산금융사업 관련 청년 창업자 지원사업
- 2.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제반 사업 관련 창업 지원 사업
- 3. 디지털자산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사업
- 4. 디지털자산관련 기술, 관리, 운용 등의 전문인력 양성
- 5. 디지털자산금융산업의 투명성, 건전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
- 6. 디지털자산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

- 7. 디지털자산관련 국제적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사업
- 8. 디지털자산 관련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
- ④ 기금은 금융위원회의 정책과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에 따라 디지털자산금융산업진흥원이 운용 및 관리한다.
-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디지털자산 전문인력 양성) 정부는 디지털자산 관련 기술 및 디지털자산 금융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전문인력의 단기·중기·장기별 수급 전망
  -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계획
  - 3. 전문인력에 대한 훈련 및 재교육
  - 4. 전문교육기관의 확충과 지원

# 제3장 디지털자산금융사업 인가

- 제26조(디지털자산금융사업 인가) ① 디지털자산금융사업을 영위하고 자 하는 자는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자산금융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 가.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일 것
- 나. 외국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디지털 자산금융사업에 상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상당하는 국내의 디지털자산금 융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 또는 그 밖의 영업소를 둘 것
- 2. 1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 3. 이용자의 보호와 이용자 정보보호에 필요한 만큼 가능하고 그 영 위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금융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 소프트웨어와 설비, 그 밖에 물적 설비를 갖출 것
- 4. 영위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금융사업의 사업계획이 건전하고 타당할 것
-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부합할 것
- 6. 대주주나 외국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 가.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가 주식회사일 경우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나. 외국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

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 8.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간의 이 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 9.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결의된 자금 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기에 충분한 전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상근직 국제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를 1인 이상 배치 할 것
- ③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인가 요건의 충족을 확인하는 업무를 디지털자산금융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인가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인가의 신청 및 심사) ① 제26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자산금융 사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3개월(제28조에 따른 예비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심사 기간을 산정할 때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 심사를 할 때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다.
- ⑤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⑥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인가처분을 하 여야 한다.
- 1. 제26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인가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⑦ 제4항에 따라 조건부 인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⑧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하거나 제7항에 따라 그 인가의 조건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인가의 내용

- 2. 인가의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에 한한다)
- 3. 인가의 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조건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
-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신청서 등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디지털자산금융사업 예비인가) ① 제26조에 따른 디지털자산금 융사업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2개월이내에 제2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가 신청에 관하여 홈결이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예비인가 신청과 관련된 홈결의 보완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 심사를 할 때 디지털자산거래시장의 안정,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조건부 예비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 ⑤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예비인가의 조건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등 예비인 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디지털자산금융사업 인가조건의 유지)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제26조에 따른 디지털자산금융사업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제26조제2항 각 호의 인가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6호나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한다.

제4장 디지털자산의 사전투자모집과 공식 발행 거래

- 제30조(디지털자산발행등록) ①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국외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디지털자산 발행인
  - 2. 디지털자산 발행 및 운영 인력의 이력과 정보
  - 3. 디지털자산의 기술적 정보
  - 4. 디지털자산의 산업적 사용 목적 및 활용 계획 정보

- 5. 총 발행량과 기간별 발행 또는 채굴량에 관한 정보
- 6. 이용자 보호 계획 정보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래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그 밖에 디지털자산거래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등록신청서 양식과 등록의 방법·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사전투자모집) ①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는 발행하고자 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하여 사전투자모집을 통하여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관하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디지털자산 거래소 상장을 위한 심사) ① 디지털자산발행인(국외에서 발행하는 디지털자산을 포함한다)은 디지털자산을 디지털자산을 다지털자산 건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로부터 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 1. 제30조에 따른 등록 절차를 마칠 것
-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 3.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기관에 20억원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을 예치할 것
- 4. 디지털자산전문평가기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공인 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기관 중 둘 이상의 전문기관으로부터 디지털자산에 대한 법률적, 기술적, 회계적 검증을 받을 것
- 5. 제18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준 이상일 것
- 6.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가 정한 이용자 보호 정책을 준수할 것
- 7. 그 밖에 재무건전성, 발행하는 디지털자산의 건전성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 ② 디지털자산 발행인이 상장 심사를 요청할 경우 디지털자산금융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제출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상장 적합 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 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심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흠결의 보완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기술 수준,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 털자산 발행인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전부 또는 일부

- 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⑤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 및 인터넷진흥원장 등과 협의할 수 있다.
- ⑥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받은 디지털자산발행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건 유지 여부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①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장 적합성 심사 결과를 취소하고 거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신청을 한 경우
- 2. 제6항의 조건 유지 여부에 미달하는 경우
- 3. 그 밖에 디지털자산거래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 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⑧ 디지털자산의 상장 심사에 관한 심사요건, 절차, 조건 유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미인가 디지털자산의 상장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상 장 심사를 거쳐 인가받지 아니한 디지털자산을 디지털자산금융사업 자가 운영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등록하여 매매할 수 없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상장 심사를 거치지 않은 디지털자산을 자기가 운영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

- 에 상장하여 임의로 매매할 수 없다.
- ③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임의로 상장 심사를 행하거나 상장 심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이를 알선할 수 없다.

#### 제5장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 제34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 및 디지털자산발행 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영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 및 디지털자산발행인은 해당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업업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5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이용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과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두고,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한 후 그 사실을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에 알려야한다.
- ④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외 내부통제기 준 및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고객의 디지털자산 보호의무) ①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디지털자산금융사업 영위를 위한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전자적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 및 재해 등을예방하기 위한 체계 및 침해사고 또는 재해 발생 시의 피해확산, 재발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명의의 디지털자산 중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콜드월렛 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고객이 예치에 따른 수수료 등의 이유로 콜드월렛에 저장을 원하지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37조(명의대여 금지)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디지털자산금융사업을 대신 영위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다.

- 제38조(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①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이용자가 디지털자산의 건전성 및 자산거래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가 취급하는 디지털자산에 관한 정보 및 백
  - 2. 상장심사 평가기관이 제공한 법률적, 기술적, 재무적 평가 내용
  - 3. 디지털자산의 메인넷 등 기술적 기반 환경, 전송 방법, 보관지갑의 종류 등 안전한 전송과 보관을 위한 정보
  - 4. 디지털자산의 영업 및 거래방법에 관한 정보
  - 5. 디지털자산거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손익
  - 6. 수수료 등 거래비용에 관한 정보
  - 7.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인가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발생하는 업무 처리 절차와 손실 위험
  - 8. 그 밖에 디지털자산금융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 기준, 정보 공개의 범위 및 공개 방식 등에 대해서는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가 정보를 공시할 때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또는 디지털자산의 가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공시하여서는 아

니 된다.

- ④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정보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에게 1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수수료) ①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가 디지털자산금융사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수수료 항목과 요율에 대하여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③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이용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이해상충 관리) ①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와 이용자의 사이 또는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의 사이,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와 그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

- 성을 파악 및 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한 방법 또는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금융사업의 이해상충 관리의무 이행을 수시로 관리·감독하고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41조(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업무위탁 금지) ①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디지털자산금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3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지 아니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사업의 업무위탁의 절차 및 제한이나 그 밖에 업무위탁이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제42조(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고지의무) ①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이용자를 상대로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의 명칭과 내용, 매매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을 이용자가이해하였음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들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43조(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표시·광고) ①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 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표시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광고(이하 "표시·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
- 2.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표시 · 광고하는 행위
- 3.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 4. 다른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불공정한 경쟁을 하는 행위
- 5.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이용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 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 6.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광고행위
- ②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표시·광고를 받은 이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표시·광고를 계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③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44조(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디지털자산거래예치금) ① 디지털자산 금융사업자는 디지털자산거래예치금(이용자로부터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목적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예치 받은 금전 등을 말한다)을 고유 재산과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디지털자산거 래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디지털자산거래예치금이 디지털 자산 이용자의 재산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한 디지털자산거래예치금을 상계,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디지털자산거래예치금을 예치한 디지털자산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디지털자산거래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디지털자산거래예치금을 인출하여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과 디지털자산거래예치금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의 디지털자산거래예치금 지급과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1. 인가가 취소된 경우

- 2. 해산이 결의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⑤ 디지털자산거래예치금은 디지털자산거래 고객이 입금한 금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만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 별로 예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⑥ 예치기관은 그 예치기관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가 예치한 디지털자산거래예치금 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⑦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치한 디지털자산의 동일 종목의 동일 수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예치기관의 디지털자산거래예치금 관리, 디지털자산거래 예치금의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보상 계약) ① 디지털자 산금융사업자는 제44조에 따른 예치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피해보상계약(이하 "피해보상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할 수 있다.
  -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 2. 이용자의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별개의 계약
  - ②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제1항의 피해보상계약에 따른 지급보증

- 액이 제44조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한다.
- ④ 그 밖에 피해보상계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피해보상대상 및 범위 등은 디지털자산금용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별로 달리 정할수 있다.
- 제46조(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디지털자산 상장과 영업) ①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제32조에 따른 심사를 통과한 디지털자산을 상장하고 거래 영업할 수 있다.
  - ② 특정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하여, 상장 및 거래 적합성 평가를 받은 디지털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을 자기가 운영하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 영업할 수 없다.
  - ③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 제47조(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디지털자산금 융사업자의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여부판 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 및 그 임직원,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 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 2.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 3. 디지털자산금융사업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록, 지 도,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 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 4.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교섭, 체결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 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가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은 자
- 제48조(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의 배상 책임) ① 제47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디지털자산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47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49조(시세 조종 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거래 현황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제3자가 그 디지털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약속한 후 매도하는 행위
  -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제3자가 그 디지털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약

속한 후 매수하는 행위

- 3. 디지털자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 또는 수락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그 디지털자산의 매매 현황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 2. 그 디지털자산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도하는 행위
- 3. 그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의 표시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 ③ 누구든지 전자적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익을 목적으로 디지털자산의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0조(시세 조종 행위의 배상 책임) ① 제49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디지털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49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

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51조(디지털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금지) ① 디지털자산금융사업 자는 고객의 디지털자산에 관한 입금 및 출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가 고객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입금 및 출금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유를 미리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52조(임의적 입출금 차단에 대한 배상책임) ① 제51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디지털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51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 부터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제53조(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정한 수단 및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
  - 2.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이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3.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4조(부정거래 행위 등의 배상책임) ① 제53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때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53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제55조(시장질서교란행위의 금지) ①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미공개 정보인 점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달받 은 자

-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 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 다. 해킹, 절취, 기만,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 인 점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달받은 자
-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되는 정보
  - 가. 디지털자산 매매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디지털자산의 매매 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
  - 나.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 ② 누구든지 디지털자산의 매매 등에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래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3. 손익의 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 그 디지털자산을

매수 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사전에 약속한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디지털자산의 수요, 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디지털자산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제7장 디지털자산금융산업 관련단체

- 제56조(디지털자산공정거래단체 설립 등) ① 디지털자산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공정거래단체(이하 "단체"라 한 다)를 설립한다.
  -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 ③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필요한 경우 지부를 둘 수 있다.
  - ④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⑤ 디지털자산공정거래단체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7조(유사 단체 설립 금지) ①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아닌 자는 디지 털자산공정거래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 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8조(단체의 가입) ①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단체에 가입하여야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가 디지털자산공정거래단체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 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59조(단체의 업무)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하기 위한 회원에 대한 지도와 권고
  - 2. 회원에 대한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 권고
  - 3. 회원의 재무상태 및 신용정보에 대한 분석
  - 4. 이용자 민원의 상담
  - 5. 디지털자산금융산업과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발전을 위한 조 사, 연구
  - 6. 표준 약관의 제정 및 개정
  - 7. 블록체인, 본인신원확인 등 디지털 자산금융사업 관련 기술개발 및 검증
  - 8. 해킹, 정보유출 등의 보안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
  - 9. 디지털자산 투자의 안전성을 유도하기 위한 자격제도 확립
  - 10.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

문가 양성 및 자격제도 확립

- 11.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배상 보장사업 및 공제조합 설립
- 12. 이 법령에 유지 발전을 위한 전문 연구 수행
- 13. 그 밖에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제60조(단체의 정관) ①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가입, 제명 및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6.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 7.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8. 회비의 분담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9. 회의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단체는 정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8장 감독 및 처분

- 제61조(감독) ①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금융거래사 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디지털자산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단체 및 단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 독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62조(검사) ①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금융거래사업자의 업무와 자산 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자산금융거래사업자에게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검사의 방법, 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수 있다.
- 제63조(인가취소 및 영업정지) ①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금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디지털자산금융사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디지털자산금융사업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디지털자산금융사업의 인가 를 받은 경우
- 2. 해당 허가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 3.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아니한 경우
- 4.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 록을 말소한 경우
- 5.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6.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 제38조 및 제46조의 상장 심사 및 거래 등록 절차를 어기고 거래를 한 경우
- 7. 제29조에 따른 인가 조건의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8.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9. 제64조에 따른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47조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1. 제49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2.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의적 입출금 차단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3. 제53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4. 제55조에 따른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5.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디지털자산금융사 업을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
- ②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수 있다.
- 1.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제64조(시정명령 등) ①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금융사업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 2.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3. 경고
- 4. 주의
- 5.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임직원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1. 해임 또는 면직
-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직
- 3. 문책 경고
- 4. 감봉
- 5. 견책
- 6. 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제65조(보고 및 조사) ①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이용자 보호 또는 건 전한 디지털자산금융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디지털자산금융산업진흥원의 장에

- 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 2.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을 위한 출석
- 3. 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 ③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47 조, 제49조, 제51조, 제53조,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제2항제3호에 따라 제출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영치
- 2. 관계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대한 출입을 통한 업무,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조사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보고, 조사의 방법, 절차,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66조(청문)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제30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자산 발행등록의 취소
- 2. 제32조제7항에 따른 상장 적합성의 취소
-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에 대한 인가의 취소
- 4. 제64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 구 또는 면직요구
- 제67조(과징금) ①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제47조, 제49조, 제51조, 제53조 및 제5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에 대하여 제63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 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3. 위반행위로 인한 취득한 이익의 규모
  - 4. 영업정지기간(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

다)

- ④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 ⑤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8조(준용규정) 과징금 부과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과오납금의 환급, 환급가산금, 결손처분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431조부터 제434조까지, 제434조의2, 제434조의3, 제434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다.

## 제9장 벌칙

-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위반행위로 얻은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 1. 제32조제7항에 따른 거래 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 2. 제47조를 위반하여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 공개 중요정보를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 3.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 롯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
- 4.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5.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의 매매를 대량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디지털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 6.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7.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디지털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
- 8. 제57조를 위반하여 '유사 디지털자산공정거래단체'를 설립한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디지털자산금 융사업인가를 받은 자
  - 2. 제26조를 위반하여 디지털자산금융사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디지털자산금융사업을 영위한 자
  - 3. 제37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디지털자산금융사업을 영위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에 따른 디지털자산발행등 록을 한 자
  - 2. 제30조를 위반하여 디지털자산발행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디지털 자산을 발행한자
  - 3. 제65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제63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 정지된 채 영업을 영위한 자
- 제71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한다.
  - ② 제70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수 있다.
- 제72조(몰수추징) ①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몰수할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
  - ② 제6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한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73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 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 및 제7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로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6조제2항제9호를 위반하여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증 소지 자를 두지 아니한 자
  -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 3.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
  -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한 자
  - 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 7. 제38조제3항 또는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8. 제62조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6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2. 제65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이나 증인의 출 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 요구에 불응한 자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 및 절차에 따라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가 부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 인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 정보분석원에 신고하여 수리가 된 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디지털금융사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디지털자산금융사업자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디지털자산을 발행한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디지털자산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디지털자산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